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31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김철민

문진석 • 민형배 • 이용빈

임호선 · 기동민 · 김병기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함.

위와 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 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6조).

법률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u><</u> 삭 제>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	
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u><</u> 삭 제>
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	
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	
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	
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	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u>제</u>	<u></u> 보

3항에	따른	보건	의료기]관기	·실
자의 부	범위,	보상지	H원의	분단	[비
<u>율</u> , 보	상의	범위,	보상	금의	지
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ㅎ	누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	형령으	모로
정한다					

<u>상의</u>	범위